



Compensation for Consumer Damage and Dispute Resolution Caused by Personal Data Leakage - Focusing on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

Jong-Sik Lee*

Department of Interac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All cases of compensa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volve some form of emotional difficulty. Even when material compensation is made, it is hard to say that it makes up for non-pecuniary losses, that is, emotional distress. Then is it currently possible to be compensated for emotional distress in all legal disputes? Although possible in some cases, it is not easy to claim damages for emotional distress since the action of the defendant has to be shocking and extreme, and concrete enough to prove that the defendant's deliberate and reckless action caused emotional distress. There must also be factual evidence such as receiving medical treatment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action, as well a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action and the consumer's damag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laim damages for emotional distress, and only a few cases which satisfy all the above conditions have received compensation. Th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Law stipulates 1) the right to safety 2) the right to be informed 3) the right to choose 4) the right to be heard 5) the right to redress 6) the right to consumer education 7) the right to organize 8)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s the basic rights of consumers. This paper focuses on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included in 5) the right to redress, and more specifically, the compensation for consumer damage following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terial compensation is important, but to make a better policy for both consumers and companies, it is also important to analyze the situation in which the victims suffer from emotional distress that takes place in various situations following personal data leakage, and ensure that those victims are provided with better and real compensation.

© 2018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Compensation for customer damage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Spam messages, smartphone smishing

ARTICLE INFO: Received 19 January 2018, Revised 10 February 2018, Accepted 12 February 2018.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epartment of
InteractionScience,Sungkyunkwan University, International

Hall, Sungkyunkwan-ro 25-2, Jongno-gu, Seoul, KOREA
03063 / E-mail address: jongsic@skku.edu

1. 서론

최근 ICT의 눈부신 성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PC끼리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던 인터넷 1.0시대를 지나 모바일디바이스로 사람들끼리도 연결이 가능한 인터넷 2.0시대까지 오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3.0시대의 장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의 인터넷 생태계의 편리함의 이면에 부작용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좋은 기술을 응용하여 개인정보 유출되고 또한 이를 악용하여 개인 퍼블리시티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1] 현재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다양한 소비의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 소비의 형태는 오프라인형태와 온라인형태의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며 두 방식 모두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계속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법적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2] 최근 금융기관이나 정보통신 기관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가 되고 이차적인 범죄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문자와 전화로 인해 소비자는 정신적인 피해는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사업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 외관상 보이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배상받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최대 개인정보유출인 카드 3사 NH농협, 롯데, KB국민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고객피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신적 보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이런 단편적인 예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보상에 대하여는 거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사건의 정황을 보면 기존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9개 금융사가 공동 설립하고 150개 금융사가 회원으로 있는 KCB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과정에서 개발 책임자가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얻은 고객 정보 1,500만 건을 USB를 통해서 유출하였으며 카드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 유출되었다.

이것은 이차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스팸, 스팸메세지 등 불법 텔레마케팅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고객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악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객정보에는 고객 성명(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기 본인적사항은 물론이며, 연봉, 카드 사용 내역, 개인등급 등과 같은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각 카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유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시 카드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2차적 피해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특히 가해의 주체인 신용카드사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실제 발생된 경제적, 금전적 피해에 한하고 증빙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더욱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카드사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며칠 지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소비자와 언론의 눈치를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애는 형태는 소비자의 개인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인다. 즉

눈에 보이기 위한 이러한 카드사의 대응은 유출된 정보로 국민이 겪게 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고통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2차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받은 많은 회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대출 권유,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며 현재 온라인 거래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 한다.[2]

물론 최근 개인정보를 강화하기위하여 법률이나 시스템으로 강화하며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그 정보를 당해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인한 소비자의 불안과 정서적 불안정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찾고자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의 동향과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며 또한 각국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다루었으며 특히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중심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한다.

2.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동향과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2.1 온라인 거래의 동향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은 세계 최고수준

의 환경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는데 너무나 빠르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의 규모를 뛰어 넘고 있다. 또한 활성화 인터넷을 전자 상거래가 늘어나고 그와 관련하여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찍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 되면 많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빠르고 편한 장점을 이용하여 전자 상거래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법률로 정해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본 결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3] 있으며 세부적인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거래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보호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2.2 전자상거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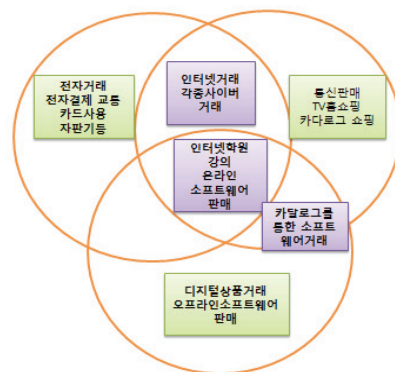


그림 1 전자 상거래의 범위[5]
Figure 1. Scope of e-commerce

“전자상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4] 현재 전자 상거래의 형태는 다양한 품목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소비자는 인터넷상에서 주된 거래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2.3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차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피해는 우선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며, 소비자단에 등의 불매운동, 다수 피해자가 대한 집단적 손해 배상 시에 기업 경영으로 타격이 되며 국가의 피해로는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 산업의 수출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6]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의[7]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하여 여성이 더 남성보다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연구가 있었으며 장기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시에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2.4 온라인 거래 상 개인 정보 유출

최근 들어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와 반대로 개인 정보의 유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하여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온라인 쇼핑에서 개인 정보 통제 욕구와 정보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많으면 그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도 더 많아 지는 것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8]

현재 온라인상의 결제 시에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반대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견해와 상반되는 상황이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개인 정보를 강화함으로 인하여 금융 피해나 온라인상에 전자상거래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너무 강화가 된 나머지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함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 뒷면 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개인 정보 유출을 대비하여 보안을 강화하면 이와 반대로 소액 거래 등 개인 정보를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는 상태이다.

표 1. 최근 5년간 주요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Table 1. Major financial company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past five years

금융회사	발생 시기	규모	내용
KB카드	2012년~ 2013년 12월	5300만 건	KCB 직원이 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뺏겨
롯데카드		2600만 건	
NH카드		2500만 건	
한국씨티은행	2013년 4월	3만4000여 건	지점 직원이 은행전신망에 있는 고객정보를 대졸모집인에게 전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2년 2월	10만3000여 건	IT센터 외주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이동형 저장장치에 넣어 외부로 유출
IBK계피탈	2011년 12월	5796건	직원인 회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고객정보 조회 후 정보를 외부로 유출
삼성카드	2011년 8월	47만 건	내부 직원이 192만여 건의 정보 조회한 뒤 47만 건을 노트북에 내려받았음.
하나x카드	2011년 7월	9만7000여 건	직원이 고객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 뒤 탈취물 외부업체에 넘겨
현대계피탈	2011년 4월	175만 건	해커가 광고 이메일 발송서버 등에 침입해 해킹 프로그램 설치한 뒤 개인정보 뺏겨

<자료: 금융 감독원, 창원지검><Sourc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hang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우리는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중요한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로 침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이미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시장에서 거래하며 도매 급으로 넘겨지고 있는 실 상황이다. <표 1>을 보면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보면 하기와 같이 개인정보의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거의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재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일부 입법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계류 중이며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법률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태이다.[9] 대 부분의 개인 정보는 중간 모집책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으며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 개인정보의 유출의 경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형태의 개인정보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는데 그 사례로 컴퓨터 메모리 해킹, 파밍, 피싱, 그리고 개인 휴대폰을 통하여 광고 스팸 문자 그리고 광고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범죄를 시도하고 있으며 더 많고 고급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스마트폰 스미싱 및 불법텔레마케팅 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태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스미싱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스미싱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며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은 증가하는 스미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정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차단하는 방법과 스미싱 탐지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스미싱의 수준이 가만 갈수록 진화되어 효과적으로 스미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10]

2.5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 피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많은 개인정보가 국민이면 공동적으로 소지하고 모든 국민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주민등록 번호를 위주로 개인 식별과 공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측면에서 온라인 상태에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등과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무분별한 개인정보요구로 인하여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장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많은 온라인 이용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거래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회원가입 등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른 간단한 식별 방식으로 유도하도록 한다.[11] 다른 연구에서 대안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다른 식별 코드를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다.[12] 그러나 이러한 식별 아이핀 해킹까지 되며 개인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일부 법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신설되면서 한층 강화된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여겨진다.

3. 개인정보보호법 목적과 동향

3.1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은 개인의 존

업과 가치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으며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과 정보 주체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측면에서 기존에 법률보다는 좀 더 강화 하기위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지만 해마다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현실에서 법률이 개정의 속도와 현실의 상황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법안이라도 하더라도 적용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스마트 시대에 많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제정과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3.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최근 동향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의 핵심 조치사항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도 모두 발이 묶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유출 피해자가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되었으며 모든 제도 시행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법정손해배상제나 징벌적 과징금제,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정보유출 기업 제재 상향 조정 등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은 대부분 국회 지적사항이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내용이다. 지난 년도에 정보 유출 특별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며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엄단과 이용자 보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던 것. 그런데 정부가 지적사항을 반영해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

출하자 정작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3] 한 법률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작업 지연으로 현행 법제도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현재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통과돼 시행에 돌입했는데, 정작 모법인 개인정보법은 계류돼 있어 법이 기형적이고 집행 형평성도 맞지 않는 상태”라며 “국회가 조속히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유통, 관광 등 모든 사회 분야로 번지고 있어, 정부 부처의 관리나 감독만으로는 사전 예방 및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는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범죄자들이 보다 강력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확고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4.1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최근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0년 54,832건이었던 침해신고 및 상담이 2011년 122,215건, 2012년 166,801건, 2013년 177,736건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의 피해를 구제해 줄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14]

표 2.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Table 2.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ompla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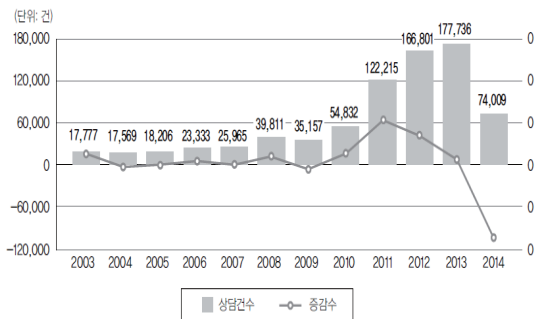


표 3.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소송 현황 (2013. 10. 기준)[15]

Table 3. Maj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ccidents and lawsuits

사업자명	사고일시	피해자수	1인당 소송청구액	재판결과	1인당 배상액	비고
엔씨소프트	2005.5	40~50만 명	500만 원		10만 원	1심, 50만 원
리나지	2006.2	28만 명	100만 원	원고패소		
국민은행	2006.3	32,277명	100만 원 3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1심, 7만 원 1심, 10만 원
LG전자	2006.9	400명	2,000만 원		30만 원	1심, 70만 원
육선	2008.2	1,863명	100~200만 원	원고패소	소비자분쟁조정 5~10만 원	2심 진행 중
하나은행	2008.4	600만 명	100만 원		10~20만 원	
LG텔레콤	2008.4	800만 명	100만 원	원고패소		
다음	2008.7	56만 명	30만 원	원고패소		
GS칼텍스	2008.9	1,191만 명	100만 원	원고패소		
현대캐피탈	2011.4	175만 명				소송 유착임
SK커뮤니케이션즈	2011.6	3,500만 명	100만 원	1심 일부승소		진행 중 / 1심 20만 원
닉스						증거불충분 무혐의/ 소송유착임
메이플스토리	2011.11	1,320만 명				
KT	2012.7	873만 명	30~50만 원			진행 중
보험개발원·협회	2009.9~ 2012.3/2013.11	800만 건				금감위 조사 및 징계조치

위 <표 2> 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계 그래프를 보면 개인정보의 침해건수

가 2013년에 급격히 증가되다가 2014년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기 <표 3>은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소송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의 인정가능성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부정하며 또 손해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정도, 이후의 구제조치, 후속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며 개인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도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16,17]

판례에 의하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 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18]이라고 하여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수단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19]

그러나 비재산적 손해 배상에 있어서 법원은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허용해주는데 이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유출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될 것 알면서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인 부분을 개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비재산적 손해 발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요즘은 재산적인 피해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피해는 평생에 치유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되며 오히려 재산적 보상도 물론 중요한 요건이지만 정신적 배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스마트폰에서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소액결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한 실제 범죄에 악용 되었을 때의 심리적인 고통은 심각한 상황이다.

과연 정신적인 피해란 이미 도래되어 일어난 정신적 피해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재산적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법원은 개인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 배상 측면에서 비재산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범익침해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침해된 법익의 내용, 침해의 정도, 이후의 구제조치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손해의 단계에서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유출의 수인한도를 정하고 위법성의 단계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보유출이라면 손해발생은 인정하되, 그 구체적 배상액 산정의 단계에서 각종 제반사정을 고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20] 우선 법원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과 구체적인 피해를 외관 상 드러나지 않지만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한 상태이다. 물론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적 재산적 피해발생을 전제요건으로 하였으나 요즘에는 그런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자체로 손해배상

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적 보상의 규정이 필요한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지켜 볼 여지가 있는 손해 배상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5. 각국 개인정보보호체계

5.1 각 나라 별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개인 정보 보험법에 관련하여 하여 각국은 다양한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는 정보주체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은 기관의 성격이나 기능, 역할, 특성 등의 측면에서 그 나라의 법적 환경이나 사회적·경제적 특성, 정보화의 진전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21]

5.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미국은 디지털시대의 온라인 신뢰의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 발표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연방차원에서 1974년 “프라이버시법 (The privacy Act of 1974)” 에 제정되었으며 정보사회에서 지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

식한 나라중 하나에 속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의 적용대상은 행정기관과 수탁업자,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법인 및 민간인 등 각 부분별로 구분되어 지며 제정된 법은 헌법이나 판례법에서 권리보호로 이어진다. 미국은 정보 통제권을 인정하여 개인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행정기관에 의해 수집, 보유, 이용 또는 배포되는 것을 개인의 서면청구나 서면동의를 받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또한 미국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국가기관이나 독립된 위원회에 의한 통제와 감독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람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바, 연방기관이 고의를 갖고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만 하고, 정보처리기관에 관한 면책조항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처리에 관하여 감독하고 통제하기 쉽지 않게 된다. 다만 프라이버시법의 이행에 관한 감독은 대통령관할 하에 있는 관리예산실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 부분적으로 담당하며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공정경쟁을 위한 집행권한에 기초하여 시장에서 위험한 개인정보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23]

5.3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보호

EU의 1995년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즉 신체적·정신적·심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라고 정의하고

있다.[24]

2012년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그러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규칙(안)」(이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과 「범죄의 예방, 조사, 수사 혹은 소추의 목적 또는 형벌 집행의 목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그러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지침(안)」(이하 “형사상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규칙안은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해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동 규칙 안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회의의 승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22]

5.4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식별번호 제도 My number 제도를 도입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기관의 설치부분 즉 정부로부터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동과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정직원들에게 최고4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이 아직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는 상태이다. 현재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스웨덴 등 주요 국가 들은 개인식별번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25]

6. 소비자보호법을 통한 정신적 피해보상

6.1 소비자 보호법을 통한 정신적 보상

우리는 온라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에 악용될 경우에 소비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소비자 보호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26]

특히 사업자는 불만처리에 있어서 귀를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에 피해의 복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27] 또한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을 통하여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보호와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8] 국제 소비자기구 (CI)는 소비자 기본적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1) 안전의 권리 2) 알 권리 3)선택할 권리 4)의견을 반영할 권리 5)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교육을 받을 권리 7) 단결권 및 단체 활동권 8) 환경권으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6.2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법에서의 정신적 피해보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 규제 방법은 행정규제, 민사규제, 형사규제로 다루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 피해의 특성은 소액이며 대규모 피해, 입증의 곤란성,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상의 복잡성 및 비대면거래 (전화권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 익명성으로 인한 사업자의 추적이 곤란한 상황이며 소비자 보호법에서도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일부 구체적인 실질적 피해 사안에 대하여 피해 구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하기 <표 4>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분쟁에 대한 근거법률과 조정기관과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분쟁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 4. 우리나라 주요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관의 현황[29]
Table 4. Status of major consumer-related dispute settlement agencies in Korea [29]

조정기관	근거법률	조정대상	조정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소비자피해	재판상 화해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기본법	소비자피해	당사자간 화해계약의 성립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기구설치법	금융분쟁	재판상 화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법	의료분쟁	재판상 화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당사자간 화해계약의 성립
통신위원회	전기통신기본법	통신서비스	당사자간 화해계약의 성립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	당사자간 화해계약의 성립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방송서비스	재판상 화해

한국 소비자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여러 사례를 들 수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6.3 중국의 소비자 보호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현재 중국도 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의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서 정신적 피해보상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보충 규정 제정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약간의 해석 (法释 [2001] 7号)》은 인격권 보호에 대해 상세히 밝힘으로써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하였으며 또한 호남성은 의료·교육·전자상거래·여행 등의 소비현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소비자 권익보호 내용에 포함시켰다.

6.4 미국 소비자 보호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미국은 불법행위법 내에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법의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1965 리스테인먼트 제402조 A에 규정) 하고 있으며 정의 : 제품의 안정성결여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체가 불량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하는 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는 1960년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판례로 적용 되던 것이 1979년 법으로 제정, 시행 되었다. 일반적인 물적 책임을 넘어 인적,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손해 배상체도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6.4.1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서 정신적 피해(精神的 被害, emotional distress)

영미 법내 의도적 불법행위의 하나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극단적이고 지독하여 타인에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적 재산적 피해발생을 전제조건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그런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자체로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6.4.2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논란이 있는 법리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리에 따르면 모든 이는 타인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7. 결 론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개인정보 신상의 노출되어 상태로 놓여 있고 온라인 가입을 유도되고 있으며 이를 도용하여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어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정신적인 배상 측면에서 입증책임과 구상하기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입증이 되더라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법원의 현실이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 재산적 배상을 이루어지고 있으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보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범죄자에 대한 형량 및 제재수준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 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상설기구의 마련을 통해 권리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며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설립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징벌적 손해배상법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많은 개인정보가 국민이면 공동적으로 소지하고 모든 국민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주민등록 번호를 위주로 개인 식별과 공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측면에서 온

라인 상태에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등과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무분별한 개인정보요구로 인하여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장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많은 온라인 이용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거래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회원가입 등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른 간단한 식별 방식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다른 연구에서 대안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다른 식별코드를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별 아이디 해킹까지 되며 개인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일부 법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신설되면서 한층 강화된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개개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소비자 보호법에 특별 규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에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 [1] D-H. Jin, *The basis of damages for damage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damage relief system*,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
- [2] B-J. Lee, and D-Y. Kim, *Protect the changing online service environment and users 3 Vol.* The Korean Consumer Law Society Annual Report 2012.
- [3]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ct 11461, 2012.06.01 (hereinafter : Article 1 of the Electronic Trade Act)
- [4] Article 2 (1)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rticle 2 (5)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 [5] Source Fair Trade Commission (<http://www.ftc.go.kr/>, Nov. 2017.
- [6] <http://privacy.go.kr/nns/ntc/pep/personalExam.do>, Nov. 2017.
- [7] J-S. Chul, and K-I. kyung,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uncertainty about the possibility of internet user information disclosure*, Journal of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pp. 731-737, 2011.
- [8] M-B. Kwon, and Y-T. Kim, *Factors causing privacy and resul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Association, pp. 25-37, 2006.
- [9] Cyber security/3 card compan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event letter Lim Chae-ho [Visiting professor at KAIST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71&contents_id=80353, Nov. 2017.
- [10] S-Y. Lee, H-S. Kang, and J-S. Moon, *A study on the shimming prevention in android platform environments*. Journal of Information Security, pp. 975-985. 2014.
- [11] H-H. Lee, *Alternative to the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pp. 49-58, 2010.
- [12] H-R. Hee, *Alternative means of resident*

- registration on the Internet*, Press and Law, Vol. 4. No. 2. pp. 82-110, 2005.
- [13] Digital Times, *I have already forgotten the information leak accident*, Kang Eun-sung reporter esther@dt.co.kr[2014 April 07, Article 9 article]
<http://www.boanews.com/media/view.asp?idx=45873&kind=3>, Apr. 2015.
- [14] Sourc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mmission (Personal Information Reporting Center of the Korean Internet Information Commission), Apr. 2014.
- [15] Inha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vided enhanced privacy dispute resolution capabilities of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plan*, pp. 8-9.
- [16] Supreme Court 2012.12.26. Judgment of 2011 DA59834.
- [17] J-K. Lee, *Approvability of damage and allocation of allegation due to personal information milestons-supreme* 2012.12.26. The 2011 Da59344 decision : Northeast Asia Legal District, pp. 545-554, Aug. 2015,
- [18] Supreme Court 2007.12. 13. Judgment of 2007DA18959
- [19] D-H. Jin, *Grounds for damages and damage relief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Jul. 2014.
- [20] J-K. Lee. *Possibility of mental damage and alimony due to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Supreme Court* 2012.12. 26. Sentence 2011 Da 59834 ruled. Northeast Asian Law Study, pp. 525-544, Aug, 2015.
- [21] M-Y. Lee, M-S. Kim, S-H. ong, H-J Lee, I-H Jang, and J-I Kim.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rvey*, p. 5, 2012.
- [22] H-N. Yu,H-J. Kim, J-S. Lee, T-S. Park, and M-S. Jeon.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omestic privacy protection ac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pp. 1091-1102, May 2012.
- [23] M-Y. Lee, M-S. Kim, S-H. ong, H-J Lee, I-H Jang, and J-I Kim.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rvey*, p.3, 2012.
- [24] https://en.wikipedia.org/wiki/Data_Protection_Directive, Jan. 2018.
- [25]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First half of the yea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verseas policy trend*, pp. 6-29, 2012.
- [26]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535&efYd=20171031#0000>, Jan. 2018.
- [27] Article 53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onsumer Relations Organization)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535&efYd=20171031#0000>, Jan. 2018.
- [28] Article 55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Request for Damage Remediation)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535&efYd=20171031#0000>, Jan. 2018.
- [29] G-S, Na Sub-dividend consumer policies under FTA, Korea Consumer Agency, p. 82, 2007.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 및 분쟁 해결에 관하여**
- 정신적 피해보상 중심으로 -

이종식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요 약

세상에는 모든 보상과 분쟁해결에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 물질적으로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인 보상에 대하여 만족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모든 분쟁에서 정신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판단하려면 피고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극단적이어야 하며 의도적이나 무모할 정도의 행동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 했다는 구체적 이어야 하며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등 사실적인 결과 있어야 하며 피고의 행동과 소비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조건이 만족 했을 때에 극소수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결과 쉽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소비자 기본적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1) 안전의 권리 2) 알 권리 3)선택할 권리 4)의견을 반영할 권리 5)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6)교육을 받을 권리 7) 단결권 및 단체활동권 8) 환경권으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 5)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중에 정신적 피해보상 중심으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하여 살펴 볼 예정이며 특히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개인 정보유출로 인한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의 모두에게 보다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Jong Sik Lee received the bachelo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Computer Aided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from the Daejin University in 2003.

He received the M.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 from the Hanyang University in 2005. He received the M.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from the Yonsei University in 2016. He receive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Interaction Science from the Sungkyunkwan University in 2014 he was a researcher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teraction Science Research Institute. He was a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action Science from the Sungkyunkwan University from 2017.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Emotional Science Brain Computing Interface (B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Convergence Science User Interface (UI) Intellectual Property. He is a life member of the KKITS.

E-mail address: jongsic@skku.edu